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 - 321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2018.12.24., 2020.5.27. 시행)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신설(안 제22조의2)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신청접수 지연 또는 거부 등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안 제23조의2)**

-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개정 (안 제24조제2항)**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 3396-4415, 메일: cya83@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구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u>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u> <u>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u> <u>3. 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구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u> <u>4.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u> <u>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구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u>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u></p> <p>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p> <p>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p> <p>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p> <p>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생략)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 ----- -----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
⑥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제 제14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 제5항에 ----- ----- -----
⑥ ~ ⑨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